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1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만희·이달희·조승환

서천호 · 김소희 · 배준영

조은희 · 정동만 · 엄태영

권영진 · 최보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농촌 경관 훼손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이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역사회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고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빈 집 문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현 시점에서 농촌빈집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일부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 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간소화 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 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빈집,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안 제2조)
 - 1)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을 말함.
 - 2)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 3)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
- 나. 국가, 지자체 및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1) 국가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빈집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 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빈집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

- 3) 빈집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집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빈집정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1)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지방세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라.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부터 제18조까지)
 - 1)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마.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안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 1)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3)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바. 특정빈집 신고 및 행정지도 등(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44조)
 - 1) 누구든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후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음.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사. 보조・융자 등 빈집정비의 지원(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 2)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3) 빈집정비사업은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아.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빈집정비협약(안 제34조, 제39조)

- 1) 시·도지사는 빈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2)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의 개발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쇠퇴와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 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

- 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빈집의 실태 및 위해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광역시장,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빈집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빈집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주변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빈집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다.

제2장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

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말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⑤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빈집 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농어촌 주택(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 등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시로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 1. 빈집 여부의 확인
 - 2. 빈집의 소재 현황
 - 3.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 4.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 5.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6.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 등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

-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⑤ 빈집 등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빈집 등에의 출입)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 등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빈집 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 등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빈집 등 또는 빈집 등 의 소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 전산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 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2. 국세・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 3. 토지 및 건축물 대장
 -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
 -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 제12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 제13조(빈집정비사업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있다.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 촌공사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5.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 된 공익법인
 -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 2.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빈집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빈집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라 한다)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건축사법」 제2 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2. 다른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소유자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 2.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야 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 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 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 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활용

- ② 빈집의 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 촌공사 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14조제3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빈집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하여야 한다.
- 제19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시행자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수 있다.
 -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2조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받 은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빈집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면 그 사실을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 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

제4장 특정빈집의 정비

- 제22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철거 또는

-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빈집 등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으로 인정되면 이를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제23조(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빈집 판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다.
- 제24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 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 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 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 제25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 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 農) 등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 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빈집정비의 지원

-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 사 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 2. 제8조에 따른 빈집 등 실태조사 비용

- 3. 제12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 4. 제34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 제2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및「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주차장법」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정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0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제31조(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 제32조(빈집정비 지원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정비의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농어촌공사 등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1. 빈집정비의 정책 지원
 - 2. 빈집정비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3.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사 업 시행자에게 정비지원기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 "정비지원기구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④ 정비지원기구 등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제2항 및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3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2. 빈집 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
 - 3. 빈집의 철거 및 관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

-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빈집과 관련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정보 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통합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사고 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 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승인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 2. 사정이 바뀌어 빈집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빈집정비사업 시행계 획을 변경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지정 해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빈집우선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 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 2.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해당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날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

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제37조(청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를 따른다.
- 제38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9조(빈집정비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의 교육·의료·교통·문화 및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이 조에서 "빈집정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빈집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41조(벌칙)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 수한다.
-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 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 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

- 다)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를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같은 조 제12호의2, 제55조제4호,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제66조, 제118조제4호, 제130조제1항제3호 및 제1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 를 "제2조제10호 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빈집정비"로 한다.

제67조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로 한다.

⑦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